<붙임>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공고(3분기)

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지원기간	○ **'26.1.1. ~ '26.11.30.** (최대 11개월)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
지원품목	○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지원내용	○ **선정업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vat 제외) **최대 80% 지원**(분기별 사후정산) * 간접 수출실적 불인정 / 상세 안내 별첨4 참고 ** 입출고비 및 동결비 제외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1, 2분기 지원액 포함 연간 총액 기준)

□ 신청안내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6.8.10.(월) ~ 8.31.(월) 16:00**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시스템** (biz.k-seafoodtrade.kr)
담 당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T.02-6300-8704, 6 / kfta@kfta.net)
필 수	1.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유형 A / 유형 B 택1)** * PDF파일(날인본) 및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 모두 제출 ① (유형 A) 신청업체 – 시설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소유주)정보, 목적물(면적, 주소, 저온창고 여부), 임대조건 및 임대료, 시설 보관내역 기재 ② (유형 B) 시설 이용계약서(보관계약서) 또는 직전분기(1분기) 이용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표)) 제출 ③ 보관료 청구 예정 저온 저장시설 사진 및 정보 작성 - 저온 저장시설명, 주소, 시설 담당자 정보 등 - 시설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1매 이상
	2.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주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로 제출
	4. **'24년 ~ '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각 1부** * 2025년 12월 이전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가입 업체는 생략 가능, 그 외 업체는 참고1 확인

선 택	5. **가점 부여 대상 서류 각 1부. (해당 시 제출)**

시설시설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예 : HACCP 인증, ISO14001 인증, ISO22000 인증 등		
신청업체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예 : HACCP 인증, ISO14001 인증, ISO22000 인증 등		
	K·FISH 보유 증빙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증빙	'23~'25 브랜드대전 수상 증빙
	수산식품명인 지정 증빙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 증빙	'23~'25 공로탑 수상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당해연도 발급 및 유효분)		

6.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별첨3 / 별첨3-1) 각 1부.

그 외	**그 외 시설 보관 등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선정평가 및 정산방법

업체선정

○ **이용 계획서 및 수출실적 등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통해 대상자 선정***

수출실적 및 가·감점영역 평가 (계량 평가)	⇨	보관(/보관예정) 시설(창고) 확인 (신규 지원 저장시설 한정)	⇨	제출서류 바탕 지원적정성 평가 (비계량 평가)	⇨	평가점수 합산 후 기준 이상 업체 선정 (선정 통보)

* 선정 및 계약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지속적 지원 희망 시 분기별 연장 신청하여 갱신 필요

정산방법

○ **지원업체의 저온 창고 보관비 지급증빙 등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지원금 지급**

시설주→지원업체 보관비 계산서 발행 (매월 말까지)	⇨	지원업체→시설주 보관비 전액 납부 (매월 말까지)	⇨	지원업체→협회 지급 증빙 등 제출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	협회→지원업체 지원금 지급 (분기 종료 후 말까지)

1) 상세한 정산방식은 별첨4 참고

2)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월별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 취소 (차년도 선정평가 시 감점)

3)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수산물 수출실적이 없음을 즉시 증빙하고, 익월에 의무 판매액을 초과 달성한 경우 해당 월 지원금 지급 가능

4) 3분기 선정업체에 한해 1분기 및 2분기 (1~6월) 소급 지원 가능
 * 단, 소급 적용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성과평가

성과평가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업체 대상 성과평가 시행** 1) 선정업체의 수출실적, 계획 대비 집행실적, 사업 협조도, 우수성과 유/무 평가 2) 평가 결과에 따른 잔여 예산 우수업체 대상 인센티브로 활용 예정

□ 유의사항

-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시설의 보관 비용이 지원 가능합니다.
- ○ 선정된 업체의 정산액 총합이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평가 순위별 우선 지급합니다.
-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전체 제출서류는 업무 추진과정 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별도공지).
- ○ 지원희망업체는 신청서 제출 전 필히 동 **모집공고 및 '지원방식 상세 안내(별첨4)'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보관예정) 저장시설 소유업체(시설주)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희망업체가 제출한 서류('② 지원사업이용계획서'를 제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8. 10.

(사) 한 국 수 산 무 역 협 회

별첨 1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저온 저장시설)

□ 신청업체 정보

업 체 명			대 표 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성명/직책		직통이메일	
	직통번호		휴대전화번호	

□ 이용 저온 창고 정보 ※ 수출 발생(/예정) 창고 모두 기입(복수일 경우 동일 양식 활용해 여러장 작성)

업 체 명			대 표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개인소유 저온 창고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업 태			종 목	
주 소	저온 창고 주소 기입			
담 당 자	성명/직책		직통번호	
이용 창고 사진				

□ 유형별 정산방식 선택

※ 정산 세부 내용 별첨2 확인

[유형 A]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저온 창고의 경우
임차 창고 이용 (면적 기반 정산)	**(보관단가 x 면적 x 보관일수) x (수출물량 ÷ 보관물량) x 80%**

보관단가 : 지역별 단가 적용(정산 세부 내용 확인) / 면적 : 건축물대장 또는 계약서의 실사용 임차 면적
수출물량 : 수출신고필증 또는 B/L 기준, 중량(KG)으로 산정
보관물량: 해당 월 거래명세서상 확인되는 보관 물량 기준(수산물만 해당)으로 산정

[유형 A]의 저온 창고 이용 월별 수출계획
※ 동일 월에 복수 품목을 보관하는 경우, 행을 구분하여 추가 작성
※ 복수의 보관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양식을 활용하며, 적용 단가는 창고 소재 지역에 따라 상이함(별첨4 참고)

월	품목	실 보관 면적	일수	보관물량	수출물량	1일 기본 단가 (VAT제외)	계
7월	*마른김*	*80㎡*	*30*	*450kg*	*300kg*	*25,000원*	*75,000*
8월	*냉동오징어*	*65㎡*	*30*	*300kg*	*300kg*	*20,000원*	*100,000*
9월							
계							

[유형 B]	여러 업체 혼용 보관 및 개별 면적 산출 불가의 경우
임차 창고 이용 外(외) (박스 단위 실비 정산)	**보관료 x (수출물량 ÷ 전체보관물량) x 80%**

보관료 : 입출고비용 및 동결비 제외한 창고 전체 이용 비용
수출물량 : 수출신고필증 또는 B/L 기준, 중량(KG)으로 산정. 단, 유형 B는 박스(C/T) 기준도 인정
전체보관물량: 해당 월 거래명세서상 확인되는 보관 물량 기준(수산물만 해당)으로 산정

[유형 B]의 저온 창고 이용 월별 수출계획
※ 동일 월에 복수 품목을 보관하는 경우, 행을 구분하여 추가 작성
※ 복수의 보관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양식을 활용

월	품목	보관물량 (KG 또는 C/T)	수출물량 (KG 또는 C/T)	월 보관료 (VAT제외)	계
7월	*마른김*	*500KG / CT*	*450CT*	*25,000원*	*75,000*
8월	*냉동오징어*	*200KG / CT*	*200CT*	*20,000원*	*100,000*
9월					
계					

□ **보관**(보관예정) **저온 창고 이용 수출 수산물 목록**

No.	품목명	HSK코드 (10자리 기입)	상시보관	No.	품목명	HSK코드 (10자리 기입)	상시보관
1			O/X	4			O/X
2			O/X	5			O/X
3			O/X	6			O/X

※ 수출 수산물이 저온 창고에 상시(1년 중 9개월 이상) 보관되는 경우 O, 그렇지 않을 경우 X 표기
※ 상기 목록은 협회의 지원업체 선정·성과평가(상기 기입 수산물 직접 수출실적 평가) 및 관리감독(저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상기 목록에 미기입된 수산물 품목의 수출실적 및 보관 인정 안함)**
※ 상기 목록에 기입한 품목의 HSK코드가 냉장·냉동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신청업체의 보관목록에서 임의 제외하거나 관세사 명의의 사유서 등을 별도 요청할 수 있음

□ **선적지**(신청업체 정보의 선적지와 동일) **인근 자사 시설 보유 여부**(저온 창고에 한함)

보유여부	O/X로 기입	창고용도	
주 소	시설이 위치한 주소(도로명) 기입		

※ 보관중인 수산물을 수출하는 항구 또는 공항
※ 협회는 선적지 인근 자사 시설 보유업체에 ①별도 시설 보관 사유 소명 요청, ②자사 시설 사용 실태 점검 등이 가능

당사는 신청서 제출 전 모집공고 및 별첨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 모든 직·간접적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 및 해양수산부와 수산물 수출지원기관이 지원과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자번호 등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국수산무역협회의 저온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산무역협회 귀중

별첨 2	지원사업 이용계획서 양식

1 신청업체 소개

* 회사연혁 등 평가에 참고할 신청업체 정보를 간략히 기술

2 저온 저장시설 이용 지원 필요성

* 신청하는 시설(시설 혹은 저장시설)·차량 사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예시

① 해외 바이어의 분할 선적 요구 및 선적 일정 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물량 보관이 불가피하며, 수출 전 단계에서 품질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온 저장시설 활용이 필요함

② 김(마른김)은 선적 전 일정 기간 저온·저습 환경에서의 품질 유지가 필수적이며,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에서는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함

3 저온 저장시설 지원사업 이용계획

* 지원금 수령을 통해 절감된 비용의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1페이지 이상)

※ 예시

① 가격경쟁력 확보 (구체적 수치, 계획 기술)

- 지원금 수령에 따른 국외판매 비용 감소로 kg당 000불의 가격경쟁력 확보, 000천불 수출실적 증대 도모

② 절감된 비용 000 투자로 수출실적 증대 도모 (구체적 계획 기술)

-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출 비용 감소분을 활용하여 000(국가, 장소명)에서 마케팅 활동 진행, 000천불 수출실적 증대 도모
-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출 비용 감소분을 활용, 품질향상 연구에 투입 연내 000성과 도출 도모

4 신청업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목표

* 신청업체의 연내 수산물 수출 목표액 및 목표액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별첨 3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양식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사업 관련, 이에 참여하는 지원업체와 저온 저장 시설주로서, 시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한국수산무역협회에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 권한 부여에 동의합니다.

접근목적	수산물의 보관 상태와 품질 유지 과정 확인 및 저온 저장시설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접근범위	지원업체가 수산물 보관 및 운용 중인 저온 저장시설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한정
영상의 저장 및 보관	협회는 영상의 저장 및 보관 권한이 없으며 실시간 영상만을 확인 단, 화면의 캡처 등 이미지의 경우 저장시설 관리의 차원에서 보관 가능
개인정보보호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에 의거하여 CCTV 영상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접근권한 동의 가능
동의의 철회	동의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철회 시 접근권한 회수

본인은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업체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3-1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정보제공서 양식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정보제공서

□ 신청업체 정보

업 체 명			
담 당 자		담당자 연락처	

□ 저온 저장시설 정보

시 설 명			
시설주소			
담 당 자		담당자 연락처	

□ 저온 저장시설 CCTV 정보

CCTV 대수			
CCTV 운영시간	□ 24시간 □ 기타_____ 예) 18:00~06:00(12H)		
CCTV 열람방법	□ 웹 □ 모바일 □ 웹/모바일 모두 지원		
사이트/어플주소			
접속아이디		접속패스워드	

* 본 서류를 최초 제출 후 지원기간 내에 해당 정보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협회에 사실을 통보하고 변경된 정보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4	저온 저장시설 지원방식 상세 안내

1 지원금 정산 요령

○ (지급 조건) 지원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출 물량 및 보관시설 이용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배정된 지원금 범위·사업기간 내에서 분기별로 정산·지급함

○ (미지급 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 청구한 해당 월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보관시설 이용 비용은 해당 분기 내 수출실적이 발생한 월에 한하며, 그 외 월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외부요인에 따른 실적 미달 등 예외 사항은 정산요건 항목 참조

○ (자부담 비용 처리) 보관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분은 지원업체가 시설주에게 직접 지급함

* 보관비(부가세 제외)의 80% 한도 내 지원, 잔여 보관비의 부가세·관리비(전기료 등)는 지원업체 자부담

○ (정산 인정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적요란에 '임차(/보관/시설사용료)'등 저온 저장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명시된 경우
- 수출물량 보관을 위해 별도로 '임차(/보관/시설사용)'한 저온 저장시설로,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창고시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정산 제외 항목)

- 지출 증빙 적요가 불명확한 비용 및 부대비용 등 기타 항목
-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저온 저장시설 임차·보관·시설사용료)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중복지원 불가)

○ (증빙 제출 기준)

-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함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한 경우, 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상 확인된 금액만 청구 금액으로 인정

2 지원금 정산 절차

○ 협회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수출실적 확인 후, 분기 종료 익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함(소수점 이하 절사)

* 단, 선정 전 발생한 보관비에 대해 사업기간 내 발생 부분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관련 증빙서류는 지원계약서(우편) 제출 시 이메일로 함께 송부

- (정산 절차)

시설주 → 지원업체 시설 보관비 계산서 발행 (매월 말)	⇒	지원업체 → 시설주 보관비 전액 지급 (매월 말)	⇒	지원업체 → 협회 지급청구 및 정산서류 제출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	협회 → 지원업체 지원금 지급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말까지)

* 신청 시설 외 다른 시설 이용 시, 지원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지원 가능 (별도 안내)

- (정산 일정)

사업수행기간	1차(1~3월)	2차(4~6월)	3차(7~9월)	4차(10~11월)
정산신청기간	~ 4.10	~ 7.10	~ 10.10	~ 12.10
정산지급기간	~ 4월 말	~ 7월 말	~ 10월 말	~ 12월 말

* 지원업체 선정 시기에 따라 '26년 1.1.부터 약정일까지 발생한 보관비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 (유형별 지원금 정산방법)

- 보관 방식에 따라 아래의 유형별 정산방식 적용하며 모든 정산 금액은 실지출금액(VAT제외) 80% 초과할 수 없음(원단위 절사)

* 정산은 실제 보관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설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청 시 제출한 보관비를 상한으로 함

구분	[유형 A] - 임차 창고 이용	[유형 B] - 임차 창고 이용 外
적용대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용하며 사용 면적(㎡)이 명시된 경우	여러 업체 혼용 보관 및 개별 면적 산출 불가의 경우
정산방식	**(보관단가 x 면적 x 보관일수) x (수출물량/보관물량) x 80%**	**보관료 x (수출물량 ÷ 전체보관물량) x 80%**
보관단가	지역별 보관단가 적용 (아래 표 참조)	입출고비용 및 동결비 제외한 실제 보관료

* 유형 A의 경우 면적 기준은 건축물대장 또는 계약서상 확인되는 실제 임차 면적

** 유형 B의 경우 창고 전체 이용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물량이 전체 보관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지원금 산정

*** 수출물량: 수출신고필증 또는 B/L 기준, 중량(KG)으로 산정. 단, 유형 B는 박스(C/T) 기준도 인정

**** 전체보관물량: 해당 월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상 확인되는 전체보관물량(수산물) 기준

- (지역별 보관단가 기준)

지 역	보관단가(vat제외)	면 적	일 수
특 지(특별시,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818.17원	㎡	1일
갑 지(시 지역)	696.97원	㎡	1일
을 지(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지역)	636.37원	㎡	1일

* 창고·시설 개수는 제한 없음

○ (지원금 정산요건 및 예외 규정)

- **수출 인정 범위**: 직접수출만 인정(간접수출 불인정)

- **수출물량 기준** : N/W(Net weight) 기준. 단, 항공수출 시 N/W 도출 불가한 경우 C/W(Chargeable weight) 적용 가능하며, 유형 B의 경우 박스(C/T) 기준도 인정

- **수출실적 산정** : 수출신고필증 기준으로 확인하며, 수출신고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 **보관비 지원 기준** : 분기별 정산하되, 수출이 발생한 월에 한해 해당 월 발생한 보관시설 이용 비용만 인정

1) 수산물 수출실적은 지원신청 시 제출한 시설 보관 수산물만 인정하며, **1불=1,200원 환산**

2) 단, 천재지변 등 외부요인으로 해당 월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즉시 증빙 제출 시 익월 의무 판매액 초과 달성을 조건으로 전월 지원금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 지원업체는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아래 서류를 협회에 제출

* 예시) 7~9월 지원금 청구 시 반드시 10월 10일까지 제출 완료

**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해당 분기 각 월별**로 준비하여 제출

구 분		제출서류
필수	보관비 증빙	- 거래명세서(월별 보관물량이 기재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시설주→지원업체 발급)
		- 보관비 전액 이체확인증(인출은행 발급)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
		- B/L 또는 AWB 항공화물운송장(혼적 시 P/L)
	이용 결과 보고	- (양식3) 지원사업 이용 결과 보고서 * 우수 성과사례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대 15점 부여
	기타	- 통장사본(최초 청구시 1회만 제출)
선택	시설 사용내역	- (양식1) 저온 저장시설 사용내역서
	시설 수출실적	- (양식2) 저온 저장시설 활용 수출실적

4 관리방안

○ CCTV가 설치된 저온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업체는 협회에 접속 권한 및 정보 제공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제공 업체에는 현장 불시점검 면제

- CCTV 미설치 시설 임차 업체 또는 화질 문제로 CCTV 활용 불가 업체는 접속 권한 제출 면제(단, 불시점검 대상에는 포함)

○ CCTV 접속 권한 미제공 업체의 경우, 저온 저장시설 사용현황 확인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회 불시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미신고 품목을 저장하여 사용한 경우 부정사용 의심업체로 분류 및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사용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당해연도 지원대상 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 정당한 사유없이 불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업체별 사업 의무 이행 불량 시 다음 연도 사업 불이익 부여

- 사적인 사유에 의한 사업 포기(중도포기 포함) 업체는 다음 연도 참가 시 감점

* 천재지변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지원포기' 업체는 제외

-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 시 불이익 적용*

* 증빙서류 제출 지연 및 서류 미비 등 **2회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정예산 30% 감액

**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이 **3회 이상**(혹은 제출예정인 **총횟수의 과반수**)인 경우 사업 지침 준수 의지가 없다고 간주, 당해연도 지원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 지원기간 내 월별 수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해당 월에 지원이 취소된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 수출실적이란 배정된 월별 지원액의 100% 이상을 말함**

5 성과평가

○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업체 대상 성과평가 진행 예정

- **평가 항목**: 직수출실적, 배정예산 집행도, 사업 협조도, 우수 성과사례

- 우수업체*로 선정 시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고득점별 선순위 인센티브** 제공

* 우수업체 : 성과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의 업체

**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 사용 비용의 최대 85%(←80%) 지원 (지원한도 초과 가능)

- 기준미달 업체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

- 지원업체별 예산 집행률에 따라 불이익 차등 적용

배정예산 집행률	90% 미만	80% 미만	70% 미만	60% 미만
다음 연도 감액 범위	10%	20%	30%	40%

6 유의사항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시설의 보관 비용이 지원 가능합니다.

○ 선정된 업체의 정산액 총합이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평가 순위별 우선 지급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신청 후 선정되어 지속적 지원금 수령 희망 시, 초기 선정 당시의 **자격·실적(가점사항, 이용계획 준수여부 등)을 유지**한 채로 **분기별로 신청 및 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 필수**

* 지원사업 계약 체결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기존 지원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단, 분기별 선정업체에 따른 예산 재분배로 인하여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업체의 부주의로 분기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모집공고를 통해 재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공백기간 동안의 저장시설 보관비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양식 1	저온 저장시설 사용내역 제출양식

수산물 보관 저장시설 사용내역

□ 2026년 __월 * 시설주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제출 가능

시설명 (번호)	품목명	물량 (kg또는C/T))	시설명 (번호)	품목명	물량 (kg또는C/T))

상기와 같은 지원시설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년 __월 __일

지원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설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식 2	저온 저장시설 활용 수출실적 제출양식

수산물 보관 저장 저온시설 활용 수출실적

□ 2026년 __월 * 시설을 통한 수산물 판매실적만 제출

구분	공항/항만명	물량(kg)	금액(U$)
계			
공항이용			
항만이용			

상기와 같은 지원시설 활용 수출실적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026년 __월 __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양식 3 지원사업 이용 결과 보고서 양식

구 분	내 용				참고사항
업체 정보	업 체 명				-
담 당 자	담당자명				실작성자 기입
	연 락 처	Tel.	Mobile.		
		Email.			
사업 결과	계량 성과	**사업 활용실적**			저장시설 이용 수출실적 (직접수출)만 기입
		직전년	1~12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__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__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__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당해년	__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__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__월	(물량) _____kg	(금액) _____U$
			* 2026년도 사업 이용기간: __월 ~ __월		
	비계량 성과	① 신규바이어 발굴, ② 기존바이어 요청응대 ③ 기존바이어대상 국외판매확대, ④기타( )			중복 선택 가능
		* 예시 ① **신규바이어 발굴** - 사업을 통해 수출 물량을 선적지 인근 저온 저장시설에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량 오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짐 이를 통해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가 성사되어 금년도 (품목) ___원 수출실적 달성. ②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 유지** - 사업 선정 이전 기간에 발생한 보관 실적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업체는 초기 자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물량의 보관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정산을 통해 자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③ **기존바이어 대상 수출실적확대** - 사업을 통해 국외판매 품목의 품질/가격경쟁력 등이 증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바이어에게 금년도 혹은 추후 (품목) ____원 수출 예정			예시 참고하여 사업활용 사례 작성
향후 목표 및 계획	사업 관련 목표 및 계획				지 원 사 업 과 관련한 업체의 향후 목표 및 계획 작성

* 사업추진과정 상 양식 변동 가능

참고 1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예시

2025년 12월 이후 수산식품 수출지원플랫폼 가입 업체는 아래의 바른 예시와 같이 한국무역협회의 2024년 및 2025년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한국무역협회의 바른 예시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바른 제출 예시

하기 한국무역협회 실적 증명서에서 인정되는 수출실적은 붕장어 7,189불으로 그 외 품목 실적 역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실적 증명서를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HSK코드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② 발급용도
	협회제출

기간: 2019/01 ~ 2019/12 (UNIT:US $)

③ 수출일자	④ 매입번호	⑤ 품 명	⑥ 수출실적	⑦ 비 고
	붕장어의것 (0304891000)	그 외 품목		
2019/01	849	671	98,520	
2019/02	0	576	82,576	
2019/03	067	321	85,388	
2019/04	521	092	66,613	
2019/05	0	377	55,377	
2019/06	431	358	37,789	
2019/07	274	456	33,730	
2019/08	829	917	35,746	
2019/09	458	900	32,358	
2019/10	786	466	12,252	
2019/11	0	671	56,671	
2019/12	974	629	37,603	
합계	7,189	647,434	74,623	

KITA

1/1 페이지

⑧ 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증명권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회장 (서명 또는 인)